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7월 25일, 서영석의원 등 15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7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5.9.22.)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9.22.)
상정, 축조심사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1.1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2025.11.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영석의원)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 단축에 용이하고, 약국에서 조제를 위해 처방정보를 입력 시 시간 단축뿐 아니라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의료기관과 환자, 주변 약국 대상으로 민간사업자가 전자적으로 처방내역 또는 처방전사본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다보니 합법적인 요건 등 서비스 표준과 전국 모든 병의원 및 약국을 잇는 전달시스템 미비로 전자처방전 활용이 미비함. 또한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등 문제점이 있음에도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연간 5억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 발행·보관에 드는 비용 절감, 의료이용 시간 단축을 통한 환자 만족도 제고, 약국에서의 처방전 입력 오류 감소를 통한 안전한 약물 사용 제고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을 도모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전자처방전을 안전하게 전송하여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정부가 직접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단체의 찬반 양론이 각각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입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신고제로 하면서 그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 중개시스템 및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